

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규정

제정 2012. 2. 3. 규정 제119호
[시행 2012.10.31.] [규정 제143호, 2012.10.31., 일부개정]
[시행 2013.12.9.] [규정 제169호, 2013.12.9., 타내규개정]
[시행 2015.1.1.] [규정 제202호, 2014.12.22., 타내규개정]
[시행 2014.12.26.] [규정 제203호, 2014.12.26., 일부개정]
[시행 2016.2.1.] [규정 제243호, 2016.2.1.,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(이하 “대학생 홍보대사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26.>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4.12.26.>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12.26., 2016.2.1.>

1. “대학생 홍보대사”란 한국장학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정부 학자금대출, 장학금 및 인재육성제도 등 재단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학생, 학부모 및 사회에 홍보하는 전국 대학생 조직을 총칭한다.
2. 삭제 <2014.12.26.>
3. “정기행사”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사무국이 개최하는 발대식, 하계캠프, 팀별 간담회를 말한다.

제4조(대학생 홍보대사의 역할) 대학생 홍보대사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학자금대출, 장학사업,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을 중·고교생 및 대학생과 학부모, 사회저변에 온·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. <개정 2014.12.26.>

제5조(사무국 운영) ① 대학생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은 대학생 홍보대사 사업의 기획과 대학생 홍보대사 선발·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내 대학생 홍보대사 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13.12.9., 2014.12.22., 2014.12.26., 2016.2.1.>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며, 대학생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부서 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<개정 2013.12.9., 2014.12.22., 2016.2.1.>

③ 사무국장은 대학생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의 명을 받아 대학생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실무책임자가 된다. <개정 2013.12.9., 2014.12.22., 2014.12.26., 2016.2.1.>

제2장 대학생 홍보대사 구성 및 운영

제6조(조직구성) ① 대학생 홍보대사는 인접 대학의 학생들로 지역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
〈개정 2014.12.26.〉

② 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역팀은 팀장·부팀장·총무 등 간부진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활동한다.

③ 지역팀들의 연합 활동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권역을 두는 한편, 지역팀장들이 호선으로 권역장 1명을 선발하고, 권역장은 해당권역 지역팀의 운영을 총괄한다.

〈신설 2014.12.26.〉

제7조(대학생 홍보대사 운영) ① 대학생 홍보대사의 활동기간은 위촉 후 1년으로 한다. 〈개정 2014.12.26.〉

정 2014.12.26.〉

② 사무국은 정기행사 또는 필요한 경우 행사를 개최한다. 〈개정 2016.2.1.〉

③ 대학생 홍보대사는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. 〈개정 2014.12.26.〉

④ 활동계획서는 팀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, 팀별 활동계획에 따라 홍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
⑤ 오프라인 모임은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를 포함하여 연간 12회 이상을 권장한다.

제8조(활동비 등 지급) ① 사무국은 대학생 홍보대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역 팀

별로 예산범위에서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기본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12.26.〉

② 제1항의 기본활동비는 지역팀 인원에 따른 구간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한다. 〈신설 2016.2.1.〉

③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만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〈신설 2016.2.1.〉

④ 사무국은 홍보경진대회, 현장답사, 보고서 발간, 홍보행사 참여 등 비용이 발생하는 특별활동의 경우에는 기본활동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, 제3항의 경우 사무국은 대학생 홍보대사로부터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, 제출받은 서류를 검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2.10.31.〉 〈개정 2014.12.26., 2015.2.1.〉

⑥ 대학생 홍보대사에게는 활동기간 중 위촉증서, 명함 등 대학생 홍보대사로서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12.26.〉

제3장 대학생 홍보대사 선발

제9조(모집) ① 대학생 홍보대사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26.>

② 공개모집은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신청을 받되, 그 모집기간은 최소 1주 이상으로 한다.

제10조(지원자격) 대학생 홍보대사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2.26.>

1.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의 고등교육기관 중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는 대학의 1~2학년에 재학·휴학(복학예정자) 중인 대학생
2. 선발 후 1년 동안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이 가능한 자

제11조(선발전형) ① 선발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고, 면접은 대학생 홍보대사로서의 소양, 인성, 능력,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. <개정 2014.12.26.>

③ 면접은 대학 소재지 지역별로 진행하고, 면접위원으로 직전기수 팀장단 및 대학별 장학·학자금 담당자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직전 기수의 대학생 홍보대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원자는 서류전형에 총점 10%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26.>

제4장 상벌

제12조(상벌) 사무국은 대학생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생 홍보대사 지역팀 또는 개별 활동 내용에 따라 시상, 징계 또는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22., 2014.12.26., 2016.2.1.>

제13조(우수팀 등의 혜택)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활동팀과 권역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봉사활동 등 특전을 포함하여 시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26.>

제14조(징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홍보대사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. <개정 2012.10.31., 2014.12.26.>

1. 대학생 홍보대사로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2. 삭제 <2012.10.31.>
3. 분기별 출석률이 50%이하인 경우

4.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식행사(발대식, 하계캠프, 팀별 간담회)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경우
5.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 팀장이 징계(제명, 주의축구 등)를 건의한 경우
6. 그 밖에 대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대학생 홍보대사로서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
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(제명 건의)의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제5호(주의축구 건의) 및 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주의축구를 하고, 주의축구가 3회 누적될 경우 제명할 수 있다.
- ④ 팀장의 건의에 의하거나 사무국이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유예 할 수 있다.
- ⑤ 제명된 자의 지난 활동내용을 모두 삭제하며, 활동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 이전에 해당 대학생 홍보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0.31.> <개정 2014.12.26.>

제15조(수료자) ① 사무국은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활동기간 종료 후 [별지서식 1]의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 <개정 2014.12.26.>

- ② 사무국은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 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활동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사무국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26.>

제16조(세부사항의 위임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생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4.12.26., 2016.2.1.>

부칙 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장학엠베서더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규정 제142호, 2012.10.31> (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137호, 2012.8.31.> (직제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내규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⑫ 장학앰배서더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·제2항제2항·제3항 중 “대외협력실장”을 각각 “홍보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·제2항 중 “대외협력실”을 각각 “홍보실”로 한다.

⑬부터 ⑳까지 생략

부칙 <규정 제202호, 2014.12.22.> (직제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내규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장학앰배서더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, 제12조 중 “홍보실장”을 “대외협력실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홍보실”을 “대외협력실”로 한다.

부칙 <규정 제203호, 2014.12.26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243호, 2016.2.1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 1]

제 20 △ △ - △ 호

수료증서

△△대학교
1900년 00월 00일생
홍길동

위 사람은 제0기 한국장학재단 대학생
홍보대사 임명기간 동안 성실히 활동하
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.

■ 활동기간 : 20△△. 1. 1. ~ 20△△. 12. 31.

20△△년 △△월 △△일

한국장학재단이사장 ○ ○ ○